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김홍걸·양기대·안민석

김교흥・변재일・진성준

임오경 · 김민철 · 권인숙

송옥주·김경만·홍성국

임호선 · 이정문 · 조승래

서삼석ㆍ허 영ㆍ최종윤

윤호중 · 정필모 · 민형배

이학영 · 이형석 · 김승원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'남북관계발전위원회(이하 위원회)'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어 있음.

이에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 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(안 제1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한다"를 "하며, 위원 중 1명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남북관계발전위원회) ①・	제14조(남북관계발전위원회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	③
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	
된다. 다만, 제2호의 위원 중 7	
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	
로 <u>한다</u> .	<u>하며, 위원 중 1명 이상은</u>
	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제1
	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
	체가 추천하는 사람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